2019년도 제21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 2019. 10. 7.(월요일), 9:30

o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강상욱, 백대용, 손승우(분과위원장)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198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500건(안건번호 제2019-125005호~126655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게시물에 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 권고하기로 의결함

o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한 계정 1건(안건번호 제2019-6374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1개 안건을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손승우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21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198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회의록 4쪽의 카페가 특정될 수 있는 정보, 15쪽 밴드명, 복제물 파일명 중 계정이름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해당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여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B 위원 :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해당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 의견에 동의하며, 회의록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카페가 특정될 수 있는 정보, 밴드명, 복제물 파일명 중 계정은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건번호 제2019-125005호~126655호로 총 3,500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25005호는 저작권자의 직원으로 보이는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현대]철혈의오버로드完"라는 제목으로 소설 복제물(소설을 캡처한 bmp.파일)을 판매한 사안임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면서)민원인은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서를 권리 소명 자료로 제출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25006호~125010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다수의 만화복제물(만화를 캡처한 jpg.파일)을 판매한 사안임(총 5개 게시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한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실행화면을 제시하면서)민원인은 보호원의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하였고,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모두 민원인이 수집한 것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19-125005호~125010호 웹하드 사이트의 불법복제물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전송하고 있는 것으

로 보임

- B 위원 :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며,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가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C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25005호~12501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건번호 제2019-125011호~125028호는 보호원이 민원 신고 없이 '중점 보호 저작물'인 단편소설 '눈길'의 복제물을 조사(모니터링)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네이버, 다음 등의 이용자가 이청준(1939. 8. ~ 2008. 7) 작가가 1977년 '문예중앙' 겨울호(준비호)에 발표한 단편소설 '눈길'을 제공한 사안임(총 19개 게시물)
'중점 보호 저작물'은 "긴급 대응 저작물을 제외하고 시급한 조치 등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호원이 인정하는 저작물"을 의미하는데, 출판물의 경우 "출간 3개월 이내 또는 주·월간 베스트·스테디셀러 1~50위"가 중점 보호 저작물로 선정될 수 있음
보호원이 어떠한 이유로 약 60년 전 공표된 단편소설을 중점 보호 저작물로 선정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함
저작권법 제133조의3 신설 전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허용되지 않는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인지 등에 관해서는 지난 제3분과위원회(2019. 9. 23. 개최, 제189회)에서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으므로 오늘 심의에서

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음

본 건 저작물은 신탁관리단체의 관리저작물로 확인되는데, 신탁단체나 출판사, 유족 등은 2004년 내지 2007년에 업로드 된 본 건 심의대상 게시물에 관해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한편 보호원은 저작권 보호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제한된 행정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투입하여야 할 것임

보호원이 권리자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치한 단편소설 복제물을 모니터링 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행위가 효율적인 저작권보호 업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있음

하지만 지난 전체심의위원회(2019. 9. 26. 개최, 제203회)에서 복제물 업로드 시점을 저작권법 제133조의3 신설 전후로 나누어 시정권고 여부를 의결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고, 복제물이 현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이상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심의위원회 입장이 정리된 바 있음

다만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추후에는 최신 저작물 위주로 보호원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게시일자가 정리된 표를 제시하면서)2001년, 2002년, 2007년 등 시정권고 제도의 시행일 전에 업로드 된 복제물이 있고, 상대적으로 최근인 2019년도 5월에 업로드 된 복제물도 있음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19-125011호~125028호 이청준의 단편소설 '눈길'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안건번호 제2019-125011호~125028호는 보호원이 민원인 신고 없이 자체적으로 '중점 보호 저작물'로 선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

로 보임

지난 전체심의위원회(2019. 9. 26. 개최, 제203회)에서는 민원인의 신고건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도 시정권고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지난 전체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단편소설 안건은 모두 보호원이 민원인 신고 없이 복제물을 조사(모니터링)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이었음

  전문위원은 형사법적으로 전송권침해 행위가 설령 '즉시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133조의3이 신설되기 전 업로드된 불법복제물이 현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게시물은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고, 금지되는 행정법규의 소극적 용은 아니라는 의견이었음

  하지만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 확산의 조기 차단이라는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권리자 등이 10년 넘게 방치한 단편소설 복제물을 민원 신고 없이 보호원이 모니터링 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행위가 행정자원의 효율적 배분 관점에서 부적절하고,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온라인상의 복제물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검토의견이었음

  공중송신권 침해는 맞지만 시정권고라는 행정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반대로 위원님들께서는 복제물이 현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이상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가결하였음

- C 위원 : (안건표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25011호~125028호의 안건표를 보면 '[중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보호원에서 어떠한 기준

으로 ‘중점 보호 저작물’로 선정했는지 의문이 있음

- B 위원 : (안건표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안건은 2001년, 2004년 게시되었고, ‘카페지기 부재중’으로 안내되어 있는 것을 보면, 권리자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치한 단편소설 복제물을 모니터링 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행위가 효율적인 저작권보호 업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적극 동의함
  해당 사안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호원이 복제물을 조사(모니터링)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놓고 해야 한다는 의견임

- C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함
  보호원의「온라인 불법복제물 등 업무 처리 규칙」을 보면, 출판물의 경우 ‘중점 보호 저작물’은 “출간 3개월 이내 또는 주·월간 베스트·스테디셀러 1~50위”가 중점 보호 저작물로 선정될 수 있다고 되어있는바, 중점 보호 저작물 선정에 있어 규칙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임
  안건번호 제2019-125011호~125028호는 지난 전체심의위원회(2019. 9. 26. 개최, 제203회) 이후 심의요청 된 건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심의대상 안건은 2019. 9. 26. 이전 모니터링 되어 심의를 요청한 건임을 확인할 수 있음

- C 위원 : 안건번호 제2019-125011호~125028호는 보호원이 지난 전체심의위원회 이전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정리된 심의위원회 입장에 따라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하자는 의견임

- B 위원 : 전체심의위원회 입장에 따라 모두 가결하되, 3분과 심의위원회의 의견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도입 취지에 따라 행정조치가 시급하게 필요한 최신저작물 등 게시물 위주로 보호원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호원에 전달해 주기 바람

- A 위원 :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보호원이 심의요청을 하면 정당성, 효율성과 관계없이 사실상 시정 조치의 권고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임
  아울러 금번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는 부가의견으로 최신 복제물 위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B 위원 : 예를 들면, 제2019-125013호는 2001. 10. 13. 게시된 것으로 현재 '카페지기 부재중' 인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치한 단편소설 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시정 조치의 권고를 하게 되면, 공권력이 사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 해당 게시자는 저작권보호심의 제도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우려가 있음

- A 위원 : 반대 입장에서 10년 내지 20년 동안 방치했던 불법 복제물에 대하여 오랫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상황에 대하여 비판이 있을 수 있음

- B 위원 :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보호원에서는 복제물 조사(모니터링)에 대하여,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추후에는 ①민원인의 신고가 있거나 ②최근 3년

이내 게시된 경우 ③오래된 저작물인데 최근 게시된 것과 같이 기준을 세워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성원영 전문위원 :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는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의 빠른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고 저작권은 사적인 권리인데, 10년, 20년 동안 방치된 복제물에 대하여 공공자원을 투입해서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이 있음

- B 위원 : 시정권고 가결의견이나, 앞서 제시한 3분과 심의위원회의 입장을 전달하자는 의견임

- A 위원 : 같은 생각임

- C 위원 :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동의함

- 손승우 분과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임
안건번호 제2019-125011호~125028호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정리된 입장에 따라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하되, 제3분과 심의위원회 입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25029호~126655호는 모두 단순 복제한 복제물을 웹하드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이용에 무단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영화 '유열의 음악앨범'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25142호는 밴드에서 첨부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밴

드는 수 차례 심의 이력이 있음

(영화 ‘안녕 베일리’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25154호는 밴드에서 첨부파일 형태로 제공한 것으로, 보호원에서 설정한 저작물은 ‘안녕 베일리’로 되어 있지만, 4개의 최신 영화를 제공하고 있음

(영화 ‘레플리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19-125162호는 밴드에서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레플리카’를 첨부파일 형태로 제공한 것으로, 밴드명만 봐서는 불법복제물과 무관한 밴드이지만 심의 이력이 있는 밴드임

(영화 ‘예스터데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19-125245호, 125251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스트리밍으로 제공한 것으로, 파일명이 “븨 틀 즈“, “ㅇ킈스ㅌㅓㄷ게ㅇㅣ“로 되어 있음

복제물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일명을 바꾼 것으로 보임

(음악 ‘산다는 건(Cheer Up)(가수: 홍진영)’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19-125984호는 웹하드에 게시된 것으로 보호원에서 지정한 저작물명은 ‘산다는 건’으로 되어 있지만,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하면 약 100개의 트로트 음원파일이 있음

(만화 ‘해골기사님은 지금 이세계 모험 중’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19-126082호는 웹하드에 게시된 것으로, 영상출판미디어가 2019년 출판한 최신 저작물을 제공하고 있음

(만화 ‘이세계 약국(출판 : 대원씨아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26125호는 웹하드에 게시된 것으로, 대원씨아이에가 2019년 출판한 최신 저작물을 제공하고 있음

- B 위원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동의하며 모두 단순 불법복제물이므로 이의 없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C 위원 : 모두 불법 복제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심의일 현재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A 위원 : 모두 단순 불법복제물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25029호~126655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25005호~126655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2쪽부터 16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4. 폐회 선언

o 손승우 분과위원장이 제21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21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0. 14.

분과위원장 손승우

위원 강상욱

위원 백대용